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3진정0272700 교수협의회 활동 반대 성명서 서명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1. 배재흠
2. 이상훈
3. 이원영

피 해 자 별지 참조

피진정인 이인수(수원대학교 총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향후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공동대표가 되어 2013. 3. 19. 설립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교수들에게 위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가 교수협의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2013. 4. 15. 09:20경 각 단과대학별로 학과장회의를 소집하여 학과장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장씩 나눠주고 당일 12:00까지 모든 교수들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수원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은 위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탈락, 재임용 탈락, 징계 등의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서 서명을 강요당한바, 이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들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

별지 1. 참조

다. 피진정인

수원대학교 교수들의 교수협의회 관련한 서명운동은 학교의 명예와 미래를 걱정하여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그간 교수협의회가 학교에 대한 악성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인터넷과 일부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교외에 알려온 것에 대하여 이를 우려한 일반 교수들이 대학의 발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성명서의 서명 강압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주장이라 생각되는바, 교수협의회에서는 서명 당일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의 익명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학교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는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서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의 진술서, 수원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들은 수원대학교 교수로서, 2013. 3. 19. “첫째,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교수가 안정된 신분으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셋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의 보호 증진에 노력한다. 넷째, 교수협의회는 재단과 학생, 교수, 교직원의 상생과 행복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언하며 공동발기인으로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를 설립하였다.

나. 수원대학교에서는 2013. 4. 10. 부총장 주재로 각 처실장, 각 단과대학 학장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기관인증평가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회의를 마친 후 교수협의회 관련 이야기가 나와 그 자리에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고 한다) 문구를 작성하였으며, 2013. 4. 15.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각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이 사건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그 성명서 용지를 각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

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서명을 하였으며, 서명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 “학교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 사건 성명서 문구>

우리 교수 일동은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비하여 전체 교수와 교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학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외부로 유포시켜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 교수 일동은 수원대학교의 미래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전력을 다해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매진할 것이며, 분열과 갈등, 혼란을 조장하여 수원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다. 2013. 4. 15. 현재 수원대학교에서 파악한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한 교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성명서 서명 교수 현황>

단과 대학	총원	서명 교수 인원	서명하지 않은 교수 인원
인문대학	112	39	73
법정대학	13	12	1
경상대학	43	29	14
자연과학대학	37	35	2
IT대학	24	18	6
체육대학	16	10	6
공과대학	71	현황을 모름	
생활과학대학	15	현황을 모름	
미술대학	18	현황을 모름	

음악대학	22	현황을 모름	
총계	371	143	102

라. 진정인들은 2013. 4. 15.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는 위 교수협의회 회원들을 찾기 위한 것이므로 회원들에게 자기 의사를 떠나 위 성명서에 서명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게시하였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인터넷 카페 공지내용>

[긴급공지] 학교측에 대한 경고

학교측에 경고합니다.

오늘 오전 학교측이 모든 교수에게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는 서명을 강요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교수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동시에 양심의 파괴를 강요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입니다. 주시하다시피 강요에 의한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 강요가 있으면 교수님들은 얼마든지 서명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학교측이 이를 강행한다면 교수협의회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서 교수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공표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측을 제소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필독〉 학교측의 교협반대 강요

모든 회원들은 자의사와 관계없이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 수십명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에 맞춰 줄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요.

마. 서울행정법원은 2014. 11. 20. 원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진정한 1 외 2명의 파면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2014구합11670)을 기각하면서, 판결문에 “수원대학교가 교수들에게 이 사건 교협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시하였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15. 1. 22. 진정한 3 외 1명이 학교법인 고운학원에 대하여 제기한 파면무효확인청구등 사건(2014가합508691)을 일부 인용하면서, 판결문에 위 서울행정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수원대학교의 이 사건 성명서 서명 강요 사실을 인정 또는 추정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총장 주재로 개최한 공식적인 회의를 마친 후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성명서의 문구가 작성된 점, 2013. 4. 15. 일 제히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각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이 사건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각 학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상당수의 교수들이 서명을 한 점, 진정한들도 같은 날 성명서 서명 강요 사실을 인지하고 교수협의회 인터넷 카페에 이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도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서명을 하게 된 것이며 서명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 “학교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란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이 사건 성명서의 서명 강요 사실을 인정 또는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진정한들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할 것을 지시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수원대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성

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 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원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28.

위원장 김 영 혜
위원 유 영 하
위원 강 명 득



별지

피해자들 주장요지

이름	주장요지
A	교협반대 서명은 학교 측에서 교수협의회 회원을 가려내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교수협의회 회원으로 지목될 경우 계약제 교수의 재임용, 승진, 연봉, 해외출장 등의 불이익이 염려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다.
B	단대 학장이 직접 방으로 찾아와서 서명용지를 나눠주며 “교수협의회 만들어 학교 와해시키면 안 된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 달라”고 사실상 서명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다.
C	단대 학장이 다른 교수가 서명한 이름 위에 자필로 다시 써 달라고 해서 서명을 했다. 2013. 4. 29. 단대 학장이 학과장에게, 또한 학과장이 각 교수들에게 “국가인권위에서 조사 나올 테니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
D	전체적으로 서명을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여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을 모른 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서명을 하여 제출했다.
E	서명을 한 당일 아침 학장이 학장실에서 학과장 회의를 소집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한 것이라며 학장이 성명서를 나눠주며 밑에다 교수들 서명을 받아 제출하라고 했다. 그래서 학과장들이 각 학과로 돌아가서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F	서명 당일 아침 갑자기 교수 방으로 모이라고 해서 교수들이 갔더니 성명서를 보여주며 서명하라고 했다. 안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 다 같이 서명을 했다. 성명서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 서명을 하게 되었다.
G	서명 당일 아침에 학과장이 전화를 하여 잠시 보자고 해서 갔더니 “요즘 학교 분위기 아시죠?”하며 성명서 보여주며 “서명하시죠”해서 서명을 하게 되었다.
H	학장이 아침에 학장실로 체육대학 소속 교수들을 모이라고 하여 학장실에 갔더니 성명서를 보여주며 “교협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학교지시에 따른다” 등의 말을 하며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을

	하게 되었다. 그 안에는 강요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I	체육대학 학장이 아침에 교수들을 학장실로 불러 성명서를 보여주며 서명을 하라고 했다. 개인의견이 반영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여서 서명을 한 것이다.
J	자의에 의한 서명이라기보다 분위기상 안하면 안 될 것 같아 서명을 하게 된 것이다.
K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서명하였다. 성명서를 학과장이 가지고 와서 옆에 서 있었고, 교수 전체에게 모두 서명을 받는다고 했다.
L	2013. 4. 14. 본부의 교무위원들이 학과장에게 지시를 내려 각 학과 교수들에게 일괄적인 서명을 받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2013. 4. 15. 출근을 하였더니 학과장이 직접 서류를 주면서 성명서에 서명을 하여 오전 중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학과장도 괴롭다면서 위에서 시키는 뜻으로 얘기를 했다. 거부하면 본부의 눈 밖에 나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총장이 직접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M	2013. 4. 14.(일)에 2013. 4. 15.(월) 9:30까지 학교에 오라는 문자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과에는 학과별로 정해진 시간까지 서명지에 서명한 것을 교무처로 보고하라고 연락이 왔었다. 학과별로 교수이름이 나열된 것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은 교수협의회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될 경우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었다.
N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정황상 확실했기에 최소한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서명은 아니며, 거의 모든 교수들이 이런 생각 하에 서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O	2013. 4. 15. 아침 예정에도 없던 단과대학 학과장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소집 후 미리 준비된 성명서를 학과장들에게 배포한 후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당일 12시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학과장이 교수들 연구실을 직접 방문하여 서명을 받아갔다. 우리 과 학과장은 위의 지시에 따라 서명을 받으러 왔다고 했다.
P	학장이 참고인을 개인적으로 불러 교학과 직원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먼저 서명을 한 후 서명을 강요했다.
Q	학장이 서명용지를 제시하면서 참고인만 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

	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다. 학교 전체적으로 외부 출장 간 교수를 제외하고 모든 분이 서명을 하였다고 들었다. 학교 측에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의사는 표시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R	2013. 4. 15. 아침에 출근하였더니, 학과에 성명서가 있었고 학과장을 통해서 오전까지 모두 서명하여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들었고, 분위기가 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참고인도 서명하였다. 서명거부는 곧 교수협의회 회원임을 의미하는데, 교수협의회 회원을 색출하려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하기는 불가능했다.
S	2013. 4. 15. 성명서에 서명은 명백히 강요된 것이다. 공포분위기에 서 누구도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T	성명서에 서명을 안 할 경우 학교 측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서명하였다. 대다수의 교수가 무언의 압력으로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U	2013. 4. 15. 학과장 방에 교수들이 모였는데 성명서를 보여주며 다른데도 다하고 있으니 서명을 하라고 했다. 그래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서명을 했다. 나중에 들으니 교무회의에서 학장한테 지시가 떨어졌다고 했다.
V	단과대 학장들이 학과장을 통해 서명용지를 내려 보냈고 학과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서명을 했다. 학교의 그간의 분위기로 보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느꼈고 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학과장의 말씀도 있었다.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탄압이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다.
W	각 학과에 성명서를 보내 서명하라고 했는데 서명할 마음은 없지만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필히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다. 그렇기에 대부분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위 정보입니다.

2015. 3. 5.

국 가 인 권 위



행정서기 김효진 (인)





국가인권위원회

수신 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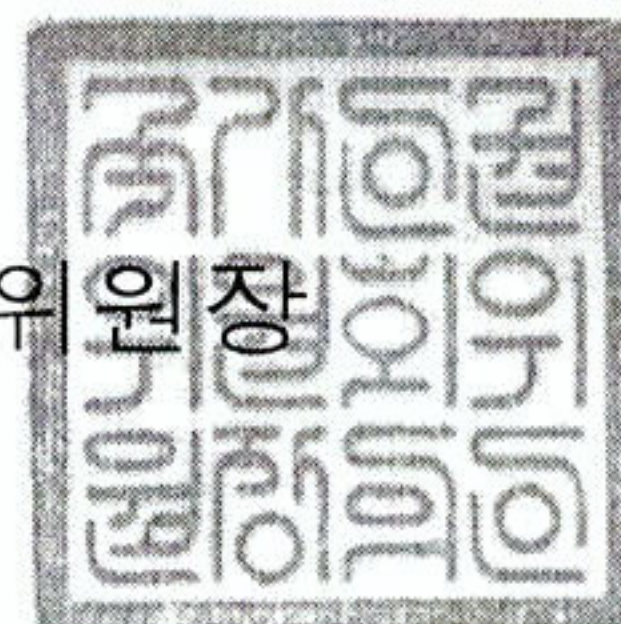
(경유)

제목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귀하께서 진정한 진정사건(사건번호 : 13-진정-0272700)에 대하여 조사 및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임 결정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기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3. 진정사건 처리결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조사관에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결정문正本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담당자 정상훈 침해조사과장 전결 2015. 3. 5. 한병일

협조자

시행 침해조사과-1872 (2015. 3. 5.)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9층 침해조사과 / http://www.humanrights.go.kr

전화번호 02-2125-9929 팩스번호 02-2125-0922 / hp386@humanrights.go.kr / 비공개(6)